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1.

발 의 자 : 박성훈 · 안상훈 · 김은혜
김성원 · 엄태영 · 박수영
이소희 · 이인선 · 임이자
김장겸 · 윤재옥 · 박충권
의원 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, 창작활동 지원,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,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,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, 전문인력의 양성,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,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

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, 이 법의 취지에
맞도록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함(안 제4조 신설).

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
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(안 제4조의3 신설).

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시
책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).

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
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
련하도록 함(안 제13조의2 신설).

마.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지원,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, 문화예술
영재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, 제15조의5
및 제15조의6 신설).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4조,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문화예술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
2. 문화시설의 설치·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4.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5.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6. 장애인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과 향유 기회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

7.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4(다른 계획과의 관계)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.

제3장의 제목 중 “문화예술복지의”를 “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예술복지의”로 한다.

제3장에 제10조·제10조의2·제13조의2·제15조·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예술인의 권리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

보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10조의2(예술인의 복지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13조의2(문화예술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, 문화시설,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15조(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및 환경 조성
2.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작·유통 및 보급 지원
3. 우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창작물의 발굴·육성
4. 문화예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
5.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

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의5(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

예술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
2.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6(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
문화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체계적·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문 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.</u> <u>②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3(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 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문화예술 진흥시책의 기본방 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</u> <u>2. 문화시설의 설치·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 <u>3.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</u>

증진에 관한 사항

4.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

양성에 관한 사항

5.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

관한 사항

6. 장애인 및 문화소외계층의

문화예술 활동과 향유 기회

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

7.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

의 확보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

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

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

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

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

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

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

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

장,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

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

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

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

<신 설>

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라야 한다.

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
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4(다른 계획과의 관계) 기
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
립되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
계획의 기본이 된다.

제3장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 예술복지의 증진

제10조(예술인의 권리보장) ① 국
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
권리보장에 관한 시책을 마련
하여야 한다.

②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
정한다.

제10조의2(예술인의 복지증진) ①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
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
련하여야 한다.

②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
정한다.

제13조의2(문화예술교육 지원) ①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

<신 설>

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 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, 문화시설,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15조(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

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및 환경 조성
2.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작·유통 및 보급 지원
3. 우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창작물의 발굴·육성
4. 문화예술 분야의 지식재산권

<신 설>

보호

5.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활동
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
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
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
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의5(문화예술 전문인력의

양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는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전
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
력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
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
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
단체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
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
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예술 전
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
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
할 수 있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
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예술 전

<신 설>

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
2.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6(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체계적·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

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